



정운 관세법인 소식지 1월 호

I. 관세동향

1. 관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1) 관세청·세관을 사칭하면서 조사, 심사, 통관 등에 의한 관세 등을 미납한 경우가 아님에도 세금 환급이나 납부를 위장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제보가 늘고 있습니다.

2) 관세청은 세금 납부 등을 위해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세관은 국제번호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수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회한 경우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거나 발송 번호로 전화하지 않고, 해당 문자를 즉시 삭제 후 번호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3) 보이스피싱 또는 관세청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대표번호인 1544-1285 또는 지역번호 없이 125로 전화하여 문자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예방’ 

1. 국제번호? ... 민원실 번호?

세관은 **국제번호**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25**

1660-4694는 민원실 번호가 아닙니다.
전자통관시스템 문의 **1544-1285**

2. 체납사실이 없는데 관세체납 안내?

세관에서 조사, 심사, 통관 등에 의한 관세 등을 미납한 경우가 아닌데 체납 안내를 받았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봅시다.

문의는 해당번호가 아닌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나 해당세관**으로!

[보이스피싱 신고] 경찰청(신고전화 112), 금융감독원(민원상담 1332)

1. 관세동향

2.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사유

□ 우편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을 수출입신고대상으로 정하는「관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고시 내용을 재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규정 정비(제16조)

○ (기존)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에 대한 법 및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고시에 나열하고,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내용을 규정

✖ ✖ ✖ ○ (변경) 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고시 본문에 중복 규정하지 않고,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부분만 규정

* 향후 시행령 개정시에도 고시 본문 변경 필요없음

□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수정(별지 제1호 서식)

○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수입신고 안내사항 추가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www.korcham.net/>)를 참고

I. 관세동향

3.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 확정

1) 개요

□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세부 운용 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내년 할당관세 대상 품목 수는 77개이며 9천67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2) 내용

□ 분야별로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19개 품목(1천21억원)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18개 품목(870억원) ▷취약산업 관련 21개 품목(1천835억원) ▷물가·수급 안정을 위한 식품·가공식품 원료 및 산업·발전 원료 19개 품목(5천944억원) 등이다.

□ 기재부는 입법예고 이후 산업용 요소(요소수 원료)와 인산이암모늄(비료 원료)에 대한 수급 불안 우려 문제가 제기돼 정기할당 대상 품목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3) 조정 관세

□ 조정관세는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확정됐다.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p까지 인상해 운용하는 탄력관세다.

□ 기획재정부령 개정사항인 시장접근물량(TRQ) 증량과 특별긴급관세도 입법예고안과 같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참깨 등 13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리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물량기준 발동 조건이 65만4천995톤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II. FTA



1. 한-인도 EODES 정식 개통

1) 개요

□ 우리나라와 인도는 한-인도 CEP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구축하고 '23. 12. 22(금)에 정식 개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질의 / 답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 응답 사례

□ (질문1) EODES 교환시 종이 C/O는 발급받을 필요가 없나요?

○ (답변1) EODES와 C/O의 발급/보관/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개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C/O원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질문2) EODES 전송(교환) 오류 발생시 통관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답변2) EODES가 시행되더라도, 종전과 같은 종이 C/O로도 상대국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II. FTA



1. 한-인도 EODES 정식 개통

(질문3)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기 공지된 '중·수량 단위 및 적재항·목적항 코드'만을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3) 원활한 EODES 구축·운영을 위해 인도 관세청과 공통으로 사용할 '중·수량 단위 및 적재항·목적항 코드'를 합의하여 게시번호 202311082287, 202311072285, 202310192272에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목적항(인도 관세청이 작성)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인도의 수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질문4) 한-인도 EODES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가 있나요?

(답변4) '19.5월 양 관세당국이 체결한 '한-인도 CEP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양해각서(국·영문)'를 공지하오니, 양국 관세당국에서의 특혜세율 적용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관세청 FTA집행과(전화 042-481-3272, 이메일 kcsfcd@korea.kr)

※ 첨부 : 한-인도 CEP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양해각서
(국·영문)



함께 성장하는 정운 관세법인입니다.

본 소식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